삼정 KPMG

Tax News Flash
- Transfer Pricing & Customs

April 6, 2026

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.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/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01 이전가격

미국: APMA 프로그램 2025 년 APA 통계 발표 (Announcement 2026-8)

미국 국세청(Internal Revenue Service, "IRS")은 Announcement 2026-8 을 통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(Advance Pricing Agreement, APA)에 대한 2025 년 APMA(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)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.

해당 보고서는 APMA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, 구조 및 주요 활동을 설명하는 27 번째 보고서입니다. 다만,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

Announcement 2026-8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2025년에 체결된 APA 건수는 110건으로, 2024년의 142건 대비 감소했습니다.
- 2025년에 체결된 APA 중 갱신건의 비율은 50%로, 2024년의 58%보다 낮았습니다.
- 과거에는 체결된 APA 절반 이상이 미국 외 모회사 및 미국 자회사간 거래(2024년의 경우 56%) 였으나, 2025년에는 미국 외 모회사 및 미국 자회사간 거래와 미국 모회사 및 미국 자회사간 거래건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.

- 2025년에 체결된 APA의 대상거래 대부분은 용역 제공(service provision)과 관련된 거래였습니다.
- 2025년 APA 체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44.1개월이었습니다.

조지아: 국제 '특수관계거래' 신고서식 도입

2026 년 2 월 24 일, 조지아 재무부는 명령 제 52 호(Order No. 52)를 통해, 법인세 신고 시 국외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신고서식을 도입하였습니다.

해당 서식은 특수관계자 간 모든 국외거래, 우대세율 적용 지역 거주자간 거래, 고정사업장 관련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, 거래 상대방 정보, 거래 유형 및 금액, 미수·미지급 잔액, 이전가격 문서화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
본 서식은 연간 해당 거래규모가 GEL(라리) 500,000 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, 무상거래의 시가 및 채권·채무 잔액도 거래규모 산정 시 포함됩니다. 해당 의무는 2025 년 신고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에스토니아식 법인세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, 해당 양식은 3 월 신고서와 함께(4 월 15 일까지) 해당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외 납세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 시(다음 해 4 월 1 일까지)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벨기에: 소재지국 추가세(QDMTT) 및 소득산입규칙(IIR) 추가세 신고기한 연장

벨기에 과세당국은 적격최저한세 추가세(QDMTT) 및 소득산입규칙(IIR) 추가세 신고기한을 2026 년 9 월 30 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.

본 연장 조항은 행정상 유예 조치에 따른 것으로, 당초 신고기한(2025 년 11 월 30 일)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

[법정 신고기한]

벨기에 최저한세법에 따르면, DMTT 신고서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11 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. IIR 추가세(top-up tax) 신고서 제출 기한은 GloBE 정보신고서 제출기한과 일치하며, 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15 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.

다만, 최초 신고 기한은 2024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 후 18 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연장됩니다.

[연장된 신고기한]

행정상 유예 조치에 따라, 2026 년 9 월 30 일 이전에 도래하는 모든 DMTT 및 IIR 추가세 신고기한은 2026 년 9 월 30 일로 연장됩니다.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DMTT 신고

2023 년 12 월 31 일 이후 개시하고,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종료하며, 2025 년 9 월 30 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.

IIR 추가세(top-up tax) 신고

IIR 추가세 신고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해당 제출기한이 적용됩니다.

- 2023년 12월 31일 이후(당일 포함)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에 개시되어, 2025년 2월 28일 이전 또는 당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; 또는
- 2025년 1월 1일 이후(당일 포함)에 개시되어, 2025년 5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

벨기에 과세당국은 신고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세부사항을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.

본 서식은 연간 해당 거래규모가 GEL(라리) 500,000 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, 무상거래의 시가 및 채권·채무 잔액도 거래규모 산정 시 포함됩니다. 해당 의무는 2025 년 신고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에스토니아식 법인세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, 해당 양식은 3 월 신고서와 함께(4 월 15 일까지) 해당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외 납세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 시(다음 해 4 월 1 일까지) 제출하여야 합니다.

02 국제조세

최신예규/판례: 서면-2024-법규국조-2404, 2026.01.29

제목: 파트너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(이하 "A 법인")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 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, A 법인의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

1) 사실관계

- 질의법인은 2013.11.25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, 호주 소재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A 파트너십의 지분을 포함한 자산의 인수, 취득 및 운영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함

→ 2017.12.21 몰타 거주 B 파트너 및 C 파트너(이하 "파트너")의 지분 100%를 취득하였으며, 동 파트너를 통해 A 파트너십 지분의 35%를 보유하고 있음

→ 파트너는 A 파트너십 지분 보유 및 배당 수취를 유일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, 그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음. 파트너에게는 A 파트너십 소득의 35%에 상당하는 호주

원천소득이 발생하며, 동 소득은 호주 세법상 파트너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호주 과세소득에 해당함

- 질의법인의 파트너가 2022 사업연도 이전 MPP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3년 2월 파트너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,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

2) 질의 내용

- 호주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인 몰타법인이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조법 시행령 제62조의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

3) 답변 내용

- 사실관계와 같이,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의 소득이 파트너인 A법인에게 귀속되어, A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호주에서 신고 및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, A법인의 국조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

4) 답변 내용

-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
-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【실제발생소득의 범위】

03 관세

IEEPA 관세 환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

美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국제무역법원의 "관세 환급 명령"에 따라 CBP 가 IEEPA 관세환급 절차("CAPE")를 완료했습니다.

CAPE 는 ACE Portal 내 하나의 기능으로 운영되며, 다가오는 **'26 년 4 월 20 일부터 Phase 1 단계에 따른 <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>를 개시할 예정입니다.**

금번 환급신청에서는 다음의 "주요 유의사항"을 포함하여, 이미 배포된 다수의 CBP 지침 및 가이드를 모두 준수하여 환급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.

특히 CAPE 內 환급신청 時, ▲사전 환급 셋팅 값 (예: 환급금 계좌의 설정 등), ▲환급신청 엔트리의 설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CBP 의 반려 없이 적시 환급금액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.

주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주요 유의사항 1) 환급수취를 위한 사전 설정 및 Phase 1 대상 엔트리를 선정하여야 함.

CAEP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▶ 환급 지연 발생

→ 환급금 계좌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▶ 환급 지연 발생 & 해당 지연기간 환급이자 수취 불가. (이유: 환급지연 귀책의 사유가 수입자에게 존재)

(주요 유의사항 2) ACE 데이터를 기초로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실제 수취할 금액과의 본세/이자 비교를 수행하여야 함.

→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▶ 과다환급액 (및 이자)에 대해서는 별도 추징 및 추징이자가 발생함.

→ 과소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▶ 사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과소환급의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음. 후속조치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 必

(주요 유의사항 3) CBP 의 질의 (예: Form 28)에 대응을 준비하여야 함.

→ 환급 과정에서 CBP 질의에 적시에 대응하여야 함

→ CBP 대응에 준비하지 않는 경우 ▶ 환급처리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.

아울러, 상기 CBP 가 배포한 CAPE 환급신청 절차 준수에 관한 종합적 검토과정에선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KPMG 는 CAPE 신청 준비 및 CBP 대응 이후 최종 환급금 수령까지 US KPMG 와 함께 One-team 을 이루어 CAPE 환급신청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귀사 IEEPA 환급 신청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.

Key Contacts

삼정 KPMG TAX6 본부

강길원 부대표(본부장)
T. 02-2112-0907

김상훈 전무
T. 02-2112-7939

윤용준 상무
T. 02-2112-0277

이영호 상무
T. 02-2112-6763

황수주 상무
T. 02-2112-6782

김태주 전무(관세)
T. 02-2112-7448

오영빈 상무(관세)
T. 02-2112-0435

김민철 상무(관세)
T. 02-2112-6677

home.kpmg/socialmedia

home.kpmg/kr/ko/home/services/tax.html

Privacy | Legal | Unsubscribe

27th Floor, Gangnam Finance Center, 152, Teheran-ro, Gangnam-gu, Seoul, Korea

©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.,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,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. All rights reserved.

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.